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신종갑 의원)

의안 번호	25-79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5. 8. .

발 의 자 : 신종갑, 강동오, 남해석,
이상원, 이한동, 채우진,
홍지광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,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 목적과 적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함(안 제1조 ~ 안 제3조)
- 나. 지역대학 축제와의 연계 방안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임원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(안 제7조, 안 제9조)
 - 「이사장, 부이사장」 → 「이사장」

3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

2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5. 8. 7. ~ 8. 13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”를 “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9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”로, “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”를 “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”로,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민법」”을 “「민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설립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.

제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, 문화행사 개발 및 추진

제7조제1항 중 “재단은 이사장, 부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”을 “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”로, “이사(이사장, 부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”를 “이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이사장, 부이사장과”를 “이사장,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이사장, 부이사장”을 “이사

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이사장, 부이사장”을 “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“부이사장이”를 “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역문화진흥법</u> 」 제19조, 「 <u>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조에 따라 <u>서울특별시</u> --- <u>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</u> ----- <u>필요한</u> -----.
제2조(적용범위)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 <u>민법</u> 」 등 재단법인의 설립·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	제2조(적용범위) ----- ----- ----- 「 <u>민법</u> 」 및 「 <u>지역문화진흥법</u> 」 ----- ----- -----.
제3조(설립) 재단은 「 <u>민법</u> 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	제3조(설립) <u>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</u> 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 <u>지역문화진흥법</u> 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단을 설립한다.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 4. · 5. (생략)	제4조(재단의 사업) ----- ----- 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지역대학과 연계한 지역축제, 문화행사 개발 및 추진</u> 5. ·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은 이사장, 부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이사(이사장, 부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 이사,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)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삭 제

③ (생 략)

④ 이사장, 부이사장과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.

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.

제9조(이사회)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, 부이사장,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(생 략)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. 다만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생 략)

제7조(임원)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-----

----- 이사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이사장, -----

-----.

⑤ ----- 이사장-----

-----.

제9조(이사회) ① -----

----- 이사

장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.

----- 정관에서 정하는

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지역문화진흥법

[시행 2022. 7. 19.] [법률 제18780호, 2022. 1. 18., 일부개정]

- 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5. 4. 1.] [법률 제20869호, 2025. 4. 1., 일부개정]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- 제9조(임원)** ① 출자·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(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둔다. 다만,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·출연 기관별 형태,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정남수
연 락 처	02-3153-8352